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2 선고 2022가단10595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김범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윤장원, 박영신, 김덕우

**변론 종결**2022. 11. 3.

**판결 선고**2022. 12. 22.

## 주 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7.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1. 7. 27. 접수 제559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28.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11322호로 대여원리금 71,955,000원(원금 6,750만 원+이자 4,4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26. 'C은 원고에게 71,9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0.부터 2020. 5. 26.까지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2020. 6. 10. 확정되었다.

나. C은 2021. 7. 16.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00만 원에 매도하고 2021. 7.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21. 7. 27. 접수 제559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C은 2019. 10.경 피고 및 피고의 전 남편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자신에게 넘어오면 반드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소송비용 및 포항 방문 비용 등 제반 경비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D은 2019. 11. 9.부터 2020. 3. 19.까지 C에게 216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C은 2020. 2. 4. 자신의 아내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C이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는 2020. 4. 9. C의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거나 C이 무자력임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C에게 다른 채권자들이 있었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C의 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로서는 기존 채권 1억 5,000만 원은 물론 위와 같이 지원한 500만 원 또한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염경호**

별지